

2021년 의회사무과 부분감사 결과보고

업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에 기여하고자 본 감사를 실시하였음.

I | 감사개요

- 감사기간:** 2021. 8. 25.[수] ~ 8. 27.[금], 3일간
- 감사범위:** 2019. 9월 ~ 2021. 8월 감사일까지 회계업무 등 부분감사
- 감사방법:** 서류 및 현장확인 병행
- 감사인원:** 감사담당(반장) 외 3명
- 주요 감사내용**
 - 각종 주요시책, 공약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
 - 예산회계분야
 - 공사계약 및 집행분야
 - 물품구매분야
 -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분야 등

II | 감사결과

- 지적건수:** 11건(처분요구 5건, 현지조치 6건)

(단위:건, 천원)

행정상 조치			재정상 조치			신분상 조치		
계	시정	주의	계	회수	환급	계	징계	주의
11	2	9	-	-	-	7	-	7

III 처분요구사항

일련 번호	건 명	요 구 내 용	
		행정상 조치	재정상 조치
계	총 5건 (시정 2건, 주의 3건)		
1	현금영수증 카드 회계절차 부적정	주의	-
2	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	시정	-
3	상품권 구매 및 관리 소홀	시정	-
4	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업무 소홀	주의	-
5	공사대금 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	주의	-

IV 현지조치사항

일련 번호	건 명	조 치 내 용	
		행정상조치	재정상조치
계	총 6건 (현지주의)		
1	업무추진비 선 결제(개산급) 정산 부적정	현지주의	-
2	세출예산 집행과목 준수 소홀	현지주의	-
3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현지주의	-
4	공사대금 지급시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	현지주의	-
5	산업안전관리비 집행확인 소홀	현지주의	-
6	국외출장여비 정산 예산과목 부적정	현지주의	-

처분요구사항

제 목	1. 현금영수증 카드 회계절차 부적정
위법부당 내 용	2019. 10월부터 2021. 6월동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를 지급함에 있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였고,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후 사용자의 실명 기재를 누락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.
처분요구 사 항	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『주의』 , 신분상『주의』

제 목	2.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
위법부당 내 용	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외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, 현재 경리담당자가 실무담당자 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겸직하여 1인이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, 반환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때에는 당일 지방재정 시스템에 수납, 반환등의 내용을 입력한후,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(출력)하여 세입세출외현금 통장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「고성군 사무전결규정」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, 출납원,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두어야 함에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총괄규정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(세입세출외 지출결의서로 결재 및 정리)로 서류 관리하고 있다.
처분요구 사 항	업무연찬 등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(2021.1.시행)) 규정에 맞게 업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,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『시정』 , 신분상『주의』

제 목	5. 공사대금 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
위법부당 내 용	공사 건은 공사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조경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서가 아닌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다.
처분요구 사 항	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상『주의』, 신분상『주의』

□ 현지조치사항

일련 번호	제 목	내 용	조 치
1	업무추진비 선 결제 (개산급) 정산 부적정	20**.*.*.*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***천 원을 선(先)결제하고 그 사무 종료일(집행목적의 달성)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	현지주의
2	세출예산 집행과목 준수 소홀	의정활동 참고용 도서 구입 5건, 의회 청사 소독 대금 지급 3건, 기념행사 따른 다과 구입 외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시 비목별 세부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적정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	현지주의
3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20**.*.*.*. 고성군의회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 구입 외 4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로 기념품, 특산물을 구매함에 있어 지급일시, 대상자 및 수량을 지급관리대장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	현지주의
4	공사대금 지급시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	▣▣▣▣▣ 공사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미집행액 정산에 따른 대금 지급액 **,**천 원의 1.25%인 ***천 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도급자에게 계약 변경 금액을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며, 약 2.51%에 해당하는 *** 천 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서류를 제출 받았음에도	현지주의

		이를 확인하여 재발급 요청하지 않아 도급자의 과도한 지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	
5	산업안전관리비 집행확인 소홀	▣▣▣▣▣ 공사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비 ***천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***천 원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이후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, 사용내역서 세부 확인결과 물품 영수증 금액은 ***천 원이 아닌 ***천 원으로 금액이 상이하며, 사용내역상 장화의 구입목록이 있으나 첨부된 사진대장 및 거래명세서에는 사용내역에 없는 조끼가 있는 등 적정하지 않은 정산 내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구가 필요함에도 조치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	현지주의
6	국외출장여비 정산 예산과목 부적정	20**년 ○○○ 국외출장여비 정산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, 2020.1.1. 시행)」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<u>세부집행기준</u> 에 따라 검토해 보면, 국외항공운임 발권(취소,변경포함) 수수료, 숙박비 결제 및 정산등과 관련한 경비의 집행은 국외업무여비(202-03) 과목의 집행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고, 공무상 불가 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,변경 수수료는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고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원국외여비(205-04)에서 집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하지만, 의회사무과-****(20**.**.**)호에 의한 ❁❖❖❖❖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산여비 지급을 할 때, 의원국외여비(205-04)로 내부결재하고 실제 세출과목은 국제화여비(202-04)]로 설정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.	현지주의